

제427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9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7)
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9)
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0)
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8)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8)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9)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1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1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1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1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1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상정된 안건

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2
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5
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5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7) 5
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9) 12
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0) 12

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8)	12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13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8)	13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9)	13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13
1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21
1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22
1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22
1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23
1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24

(10시08분 개의)

○소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는 김성범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입니다.

제가 차관 부임 후에 법안소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시고 법안소위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소위에서 우리 해양수산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을 제·개정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 모시고 법안심사 과정에 충실히 임하고 또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10시10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해기사가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즉 STCW-F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의 표를 보시면 STCW는 약어인데 이것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라 칭하고 있고 상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5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STCW-F는 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라 칭하는데 이것은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미가입 상태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STCW-F, 밑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미가입한 이 협약의 미가입 상태에서도 해수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외국 해기사의 승선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양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시키려는 취지입니다.

아래쪽입니다.

해수부는 STCW-F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관련해서는 원양 노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원법이나 선원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해양수산부 중재에 따라서 2024년 11월에 노사는 기관사 한정 참치연승 업종에 척당 1명 도입, 기본급 일괄 인상 및 한국인 선원 우선 고용 보장에 합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수정의견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현행법 제10조의2제1항의 특례에 대하여 개정안에서 재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다소 부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2항에 STCW-F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1항에서 STCW-F에 관한 규정이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의 부칙 부분입니다.

지금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원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개정안이 시급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최소한의 승선 전 적응교육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이 아닌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태우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적인 툴을 만드는 것인데 사실 STCW-F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선원들의 근로여건이라든지 노동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해 놓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면 STCW-F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그냥 전연 도외시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이미지를 줄 가능성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STCW-F 협약을 저희가 바로 비준하기에는 좀, 이것은 우리 원양어선과 연근해어선에 공히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업의 현실상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비준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협약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법에 수용을 해서 그 취지를 살려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STCW-F라는 조항 자체를 선박직원법에서 빼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어선원의 근로여건이나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등한시 한다 이런 이미지를 줄 여지는 없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원양어업의 현실도 감안을 하고 또 외국인 해기사를 일부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점들을 감안해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우리 어선, 어업의 현장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런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 나가는 노력은 그것으로 별도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우리나라 해기사분들이 반대하지는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래서 노조하고도 노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건 아니고요. 원양어선 중에서 연승어업에 대해서 기관사 1명을 태우는 것만 우선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이것을 확장하는 데는 또 다른 노사 합의가 필요할 것 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노사 합의가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STCW는 우리나라가 지금 협약에 가입돼 있습니까, STCW-F만 가입 안 돼 있고?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게 되면 3개월간 유예기간……

협약에 가입한 것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해수부가 허가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기준 같은 걸 정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승선에 필요한 적응교육 등 조금의 준비기간은 일부 필요합니다만……

○**주철현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을 좀 두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엔 무조건 그냥 승선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고 교육이라든지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무조건 외국 기관사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다 교육 받고 자격을 취득한 기관사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다 갖췄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STCW-F 기준에 따른 교육을 다 이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내 적용훈련 같은 게 필요하면 그 조건으로 승인이나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그런 취지를 잘 반영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고시라든지 필요하면 하부 규정을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법 자체에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위원장 조경태** 그리고 또 필요하면, 3개월 유예기간으로 뒀지 않습니까? 이걸 한 6개월 정도 두면 너무 텀이 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원양업계에서는 한시라도 한 명 추가 채용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 업계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당겨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이 위원님 생각은……

○**이병진 위원** 저는 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정부안대로, 정부가 말씀하신 수정안도 넣어 가지고 할까요?

저는 걱정이 우리나라 해기사분들 갈등을 좀, 동의를 구하고 나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발의했지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동의가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7)

(10시18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송옥주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문금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수산업협동조합법, 2항부터 4항까지 일괄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수산물가공수협이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산물가공수협도 지구별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명칭 선정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수협의 의견을 보시면 지구별·업종별 수협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에 동의는 하는데 지구별 수협 중에 마산수협에서 지자체 명칭 사용 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봤을 때 마산수협은 지구별 수협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가공수협이기 때문에 수협의 종류 자체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송옥주 의원안 제46조제8항 단서 부분은 여성임원 의무 선출 대상 수협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수협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인 수협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권익을 신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 여성임원을 의무 선출해야 되는 조합의 수가 현 44개에서 80개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수협에서는 좀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조합원의 출마 기회를 저해할 수 있고, 남녀 간 후보 등록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임원 선출은 조합원 결정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성곤·문금주 의원안은 어촌계장의 임기 및 활동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어촌계장의 활동을 보조하고 어촌계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지구별 수협 정관에 따라 조합에서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어촌계장 임기는 현재 어촌계 정관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활동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어촌계는 어촌마을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도 관할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수협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의 임기 연임 규정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체계 그리고 어촌계의 자율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송옥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는 어촌계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어촌계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법적 지위 또 관계 부쳐 간 의견 등을 감안할 때 활동비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문금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어촌계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행 수협법에 어촌계장의 정의와 임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기만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차관님, 어촌계장 임기하고 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순수한 어촌도 있지만 어촌이 보면 반동반어, 그러니까 농촌과 어촌이 같이 혼재돼 있는 그런 마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마을을 책임지고 그 마을에 봉사활동하는 직책이 통장, 이장, 반장, 어촌계장, 자치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분의 직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인 부분도 유사성을 띠어야 되고 활동비도 유사성을 띠어야 되고 지금 주체도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통장, 이장, 반장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훈령으로 돼 있잖아요. 활동비 지급이 행안부 훈령으로 돼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그 활동비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합니다만 그 위 상위법에, 지방자치제법이나 시행령에 관련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행안부 훈령으로 돼 있을 거예요, 법에 그 활동비가 제시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임기라든지 연임 규정은 관련 규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의 직책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라든지 부령이라든지 규칙으로 돼 있는데 유독 어촌계장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이렇게 생성해서 보조를 한다 하는 부분은 아마 그 마을 내에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문제를 여기에 좀 거론을 해 놨는데 법체계상 문제 이전에 정서적인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촌계라는 부분은, 우리 지역이 사실 농촌하고 어촌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 들으면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어촌계는 어느 정도 조금 이익집단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부여를 한다 하는 부분은 지역 내의 화합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아주 높다 저는 그리 생각해서,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장·통장·반장·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활동비 보조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법적 지위 부분 그다음에 활동비 지급 기준 부분 그다음에 연임 관련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활동비 지급, 임기 연임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는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철현 위원 저도 좀 말씀을……

○소위원장 조경태 예.

○주철현 위원 제가 시장 할 때부터 어촌계장들의 끊임없는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아시겠지만 이·통·반장들은 해당 단체장이나 단체장 위임받은 읍면동장들이 임명하고 관리하는 그야말로 행정조직입니다. 심지어 10급 공무원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어촌계장들은 그런 공조직은 아니고 지역수산업협동조합의 한 조직에 불과하고 또 자생 조직이라서 이게 임명 과정에 전혀…… 물론 승인은 합니다마는, 인가는 하게 돼 있는데 시가 선제적으로 임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생조직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인가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승인만 하게 돼 있는데, 또 물론 어촌계 조직으로서 일부 공적인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장·통장하고 완전히 같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촌계별로 사정이 다 다른데 어장 같은 게 많아서 돈 잘 버는 어촌계장들은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활동비를 받아서 1년에 이삼천만 원 수당을 받는 어촌계장도 있고 또 사정이 안 좋은 어촌계는 돈을 전혀 못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수협에서도 어촌계장 활동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협에서 한 달에 한 일이십만 원씩 활동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게 공공기관인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주는 것은 좀 체계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저는 차라리 국가나 지자체가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법체계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 해당 수협에서도 돈을 버는데도 어촌계장 활동비를 안 주는 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안 주고 어찌고 수당 안 받고도 활동할 사람이 많다 이런 핑계 대고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차라리 그냥 이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해서 임기는 놔두고 활동비에 대해서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근거규정 하나 신설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런 의견을 어촌계장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거라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 정도로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법체계상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전국에 있는 70개 지구별 수협 중에서 14개 수협을 뺀 나머지 수협에서는, 금액은 다소 다릅니다만 현재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나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수협에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것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협에서도 일괄해서 수협이 지급해야 되는 것처럼 입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의견을 제시한 바

는 있다고 그립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감안하셔서 최종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도 좀……

저희 지역에도 사실은 어민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어촌계가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유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촌계나 어촌마을이 부유하고 안 하는 것을 떠나서 어촌이나 어민들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편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15페이지에 지구별 수협 정관 중에 70개 중 14개를 빼고는 수협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형평성으로 보면 사실은 맞지 않은 거고, 수협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어촌계와의 관계 때문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정도여서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해양수산부에서 지급 주체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자체, 수협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를 하신 부분은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사실 이런 활동비 지급 문제는 앞선 21대, 20대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계셔서 논의를 쭉 했는데요. 그 입장들이 크게 좁혀지지는 않습니다. 기재부는 주려고 그러면 자체에서 줄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자체에서는 국가에서 주십사하는 얘기고 수협은 각자 알아서 수협 형편대로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또 일률적으로 입법하는 데는 좀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송옥주 위원** 지급 주체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까 주철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이 예를 들면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줄 수 있다는 근거라도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게 부령으로 기준을 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조경태** 서 위원님, 손을 들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봐주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한번 봐주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장·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부령, 훈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경비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표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각 지역 사정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지급받는 분도 있고 받지 않는 시군도 있어요.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서는 활동비를 지급받고, 받지 않는 그런 형태 같은데 그렇다면 어촌계장 역시 해양수산부 부령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수협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어촌계장에 대해서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게 되면 아마 당연

히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사실 어촌계가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지구별 수협 밑에, 지도감독을 받긴 하지만 어촌계원들이 자생적으로 조직을 해서 소득 증대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어촌계장은 그것을 잘하기 위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건데요.

현재 저희 부에서 각 수협의 어촌계 정관을 정할 때 표준모델을 작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임원, 그러니까 어촌계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관안을 만들어서 지금 일선 어촌계에 홍보하고 지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조경태** 예.

○**조승환 위원** 일단 여성임원 선출 대상 수협 범위 확대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입후보자가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석으로 둡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여성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그것이 찬반투표를 통해서 인정이 되면 선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 입후보자가 아무도 없으면?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입……

○**조승환 위원** 아예 선출을 안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선출을 안 하는 지구별 수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여성임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경우에는 별칙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별칙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입후보 안 했을 경우에는 미선출로 계속 가겠네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것은 저희들이 선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보완대책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조승환 위원** 추천을 해서 무조건 해라……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찬반투표를 거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

○**조승환 위원** 저는 30%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게 여성어업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어떤 보완조항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은 해수부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오늘도 여기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어촌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수협과 행정기관의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생이라는 명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무런 지도 감독이나 지시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통·수협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어촌계장한테 자료 내놓으라 그럴 수도 없고. 네네 이번에 수입이 얼마냐, 지출이 얼마냐 자료 내라 그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촌계의 지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사실 잘하는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가 지금 완전히 복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못 하고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수익의 일부를, 70% 정도를 지급해 주는 이런 어촌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노쇠화돼 가지고 어촌계가 제대로…… 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지는데 그걸 관리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귀어인들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이런 정책적인 목적으로 있고, 지금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단순히 임기를 정하자, 임금을 지원하자 이것보다는 사실 해수부에서부터 어촌계의 역할·기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예.

○**주철현 위원** 조승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민자치조직이 수협이고 농민자치조직이 농협인데 당장 어촌계장들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당 지급하게 되면…… 농협에 또 자생조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농반도 있고 다 있고 그러는데 거기도 또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농반도 물론 농협의 자치조직, 하부조직으로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일정 부분 또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 수당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활동비 지급하는 것은.

조승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어촌계의 역할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해서 재검토해서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상풍력 같은 것이 워낙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어촌계장의 권한이 막강해졌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게 되면 심지어 활동비 없어도 좋으니까 어촌계장 하겠다고 돈 써서 선거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어촌계장들의 권한이 막강하고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사후 점검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게 내가 보기에는 해수부에서 이 부분은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촌계장 이것 당장 정하는 것보다는 해수부의 선제적인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 검토보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두 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또 토론회 같은 것도 거쳐 가지고 어촌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이 안은 추가 논의를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철현 위원** 첫 번째 송옥주 의원안은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그것만 그냥 분리해서……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니까 송옥주 의원님 안만 통과하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9)
 - 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0)
 - 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8)

(10시40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양수 의원, 서삼석 의원, 서천호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24페이지입니다.

이양수 의원안 및 서삼석 의원안은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등 비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어선에 비치해야 되는 검사증서 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여 전자적 증서로도 검사증서 등 비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아래 수정의견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안과 서삼석 의원님의 안이 약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선행행과 관련이 있고, 이양수 의원님 안과 같이 협행법상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어선검사증서, 어선통별검사증서, 임시항행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적 형태의 비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쪽, 시행일입니다.

지금 시행일도 이양수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그리고 서삼석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인데 선박소유자에 대한 공지 등을 위하여 서삼석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서천호 의원안은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및 등록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해 지도·단속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과된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불법 건조·개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도·단속의 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시 수수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등록제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등록제 시행으로 등록업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관련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칙 부분입니다.

서천호 의원안은 시행일이 2025년 12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선건조·개조업

의 등록제를 도입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좀 전에 통과했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일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이양수 의원님 발의안과 서삼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서천호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8)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9)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10시44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박성훈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36페이지입니다.

박성훈 의원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행정절차의 민주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적절해 보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적용례 부분인데요.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절차의 적용 시점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서천호·임종득 의원안은 원쪽 주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상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고 그다음에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가셔서, 개정안은 국가안보상 시급성과 기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점용·사용허가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아래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범위에 포함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방에 관한 군사 연구시설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개정안을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서천호·임종득 의원안 간의 연계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침해를 고려하여 서천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상 사업 및 허가 처리 기간을 일치시키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조경태 의원안 제21조제7항 단서 등은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예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불이행 사례가 있고 또 다양한 예방적 기능의 강화를 통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이후 원상회복 없이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아래 부분,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요건을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이라는 것이 약간 추상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대상 행위별 예치 의무화 필요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목적 대신 대상 행위를 요건으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경태 의원안 제54조의2는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반복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에 관련해서 지금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하는 거는 적절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원상회복비용 예치 의무화,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새로 시행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동그라미 2번,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신법 시행 당시에도 기존의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이라는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공익 보호를 위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원상회복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안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박성훈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서천호 의원님 안, 임종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상 시급성과 기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

국방·군사시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과연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지방의 권한만 뺏어 오고…… 지금 자자체의 권한을 키워 주는 부분이 전반적인 대세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해서도 점·사용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입장에서 연결되는 인접 시군, 자자체의 의견을 다 듣고 그 의견이 반대가 되면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현실인데 이거를 군사의 시급성과 기밀성이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서 과연 할 수 있다…… 해수부에서 자자체와 당연히 의견 조율을 할 것이고—법상으로 의견 조율을 해야 되니까—의견 조율을 했을 때 반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수부에서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저는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군사훈련 법에서 예를 들어서 함포 훈련을 한다든지 사격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는 어선이 출입 못하도록 규정을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하게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게 맞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입법의 실효성도 없으면서 갈등만 키우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느냐라는 데서 사실 좀 실효성이 염려가 돼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어쨌든 지금 국가안보상 시급한 경우에는 자자체가 신속하게 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말씀 올린 겁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말씀 주시지요.

○문대림 위원 ‘국가안보상 시급성과 기밀성이 인정되는’ 이 판단 기준이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그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하고 12조에 보면 이해관계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외되는 내용들인데 이게 어업인의 권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국가안보상 시급성과 기밀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라 하면 어업인들이 어업권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법으로 막아서 법에 나와 있는 두 조항, 8조하고 12조를 생략해 버리는, 제외해 버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는 빠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 또……

○문대림 위원 지자체장의 권한 침해도 그렇고요. 여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어업 활동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 허가 기준 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조 7항에 보게 되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8조 7항하고 12조 4항 등의 내용을 완전히 생략해 버리는 그러한 법안의 개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업권 보장에 대해서 어민들의 요구가 많은 시점에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뚜렷한 의견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이병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 기도비닉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 첨단무기 같은 경우 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경우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지자체라든지 관계인들에게 통보하고 한다면 정보 누출 이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시급성과 기밀성, 기도비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 이해가 잘못 됐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면 타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첨단무기 같은 경우에는 다 속칭 까발리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조승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조항만 가지고서는 아까 이병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말 기도비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항에는 적용이 안 된다. 지금 문대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8조의2가 8조 7항을 배제한다고 해석이 전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허가권만 지자체에서 국가로 넘어오는 것이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상의 절차는 다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해수부장관이, 그러니까 여기에 태안을 예로 들었으니까 태안군수가 할 것을 해수부장관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

다.

그래서 제가 봄에서는 실익이 없고, 이병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기도비님이 필요한 조항 같으면 차라리 군사기지법이라든지 국방부 법에다가 군사훈련할 때 어업권 일시제 한한다든지 어선들 출입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정확한 논의를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이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배제하게 됩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국방부장관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시급성과 기밀성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주철현 위원** 저도 의견 말씀 좀……

○**소위원장 조경태** 예.

○**주철현 위원** 조경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에는 이의가 없고요.

서천호, 임종득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부분은 국가안보상 필요성, 공감을 하는데 또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너무도 무시되는 것 같아서 또 지자체장의 권한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박성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연한 내용인데 이게 아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굳이 이 조항이 불필요한 조항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 놓게 되면 지자체에서 누가 이의만 제기해도 절대 행정을 안 해 버립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일선 바닷가 시장으로 상정을 해 보니까 바다는 원래 공공의 소유이기도 하고 전 시민의, 전 국민의 바다인데 일부 선점한 분들이 마치 자기 개인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하고, 이분들이 엄청나게 기득권과 관련된 것의 횡포가 심해요. 예를 들면 여수 같은 데 여객선이 다녀야 되는데 여객선 부두가 있는데 이 부두에 같이 대자 그렇게 되면 못 대게 해요. 그러면 허가를 안 해 버립니다. 해수부도 안 해 버리고 시청도 점용허가 안 해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바다와 관련된 공공의 재산과 관련된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의 횡포가 내가 보기에는 심한데 이 조항을 넣어 버리게 되면 이제는 더 하여튼간 제어할 수 없게 돼 버리고 관련 허가청이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아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같다고 보지만 이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것 아주 불필요한 조항이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송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차관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9페이지의 태안군의 국방에 관한 군사 연구시설은 어떤 경우인 거예요? 이게 국가안보상 시급성과 기밀성과 관련된 그런 사안과 연관이 있는 사안인 건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시험연구를 위해서 접안시설을 설치하기를 아마 희망을 하는데……

○**송옥주 위원** 무기 관련된 것 시험이라든지 그런 거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관련된 기반시설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마 태안군에서 동의를 못 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자체가 사실은 해양수산에 대한 부분들을 보전을 하고 어민들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하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 국방·군사시설 사업 등에 대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와 관련된 개정안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약간 위축시키거나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충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법의 다른 조항으로 해서 국가안보상의 시급성과 기밀성이 인정돼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서 이게 논의되고 이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될까 하는 의구심은 있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서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서천호 위원**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를 조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안이 충돌은 되지 않습니다. 충돌을 하는 게 아니고, 배제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체만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방·군사는 지역적인 사안이 아니라 사실 전 영토적인 사안이고 전 정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분명해진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의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보면 태안군 이 부분을 해수부에서 예시를 들었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해수부장관으로 주체가 바뀌면 피해 보상이 정부 차원에서 더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반대 쪽으로 지자체의 권한 침해하는 부분을 예로 들었다는 부분이 조금 반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시험시설 사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국방이나 군사에 관한 시설로, 임종득 의원은 시설 사업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많은 재량이, 국가 사업에서 다른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어업권 보호하는 차원에서, 권익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또 이것도 보면 시급성 부분도 국방부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고 또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추후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제한을 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쪽 법안에, 박성훈 의원안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을 배제를 한다든지 또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도와시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권익을 정부 차원에서 더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방이나 군사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 연구나 시험시설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지자체별로 그 기준이라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들쭉날쭉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했던 건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

기 때문에.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박성훈 의원안에 대한 주철현 위원님 아까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인데 저희들이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하는 이유는 현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석하기를 어떤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지자체에서는 100% 동의를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고 해석을 하는 주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 제각각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선의 행정을 집행하는 데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재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100%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한 단체라도 반대한다고 해서 불허하지 말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 보고 허가 관청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면 허가를 해 주고 또 실제 그 지적이 맞다 그러면 불허하고 해서 현장에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행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해서 그게 이제 연구 및 시험시설 사업이든 앞으로 공유수면……

차관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해서 국방·군사시설과 충돌하는 개별 법률들이 있을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의 특별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정말 시급성을 요하고 기밀성이 인정되는 국가에서 반드시 안보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수부 차원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은 뭐냐면 이럴 때 그게 과연 시급성과 기밀성, 국가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개별 법률에 대해서 의제처리 조항을 담아내고 거기에, 아까 지원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국방·군사시설하면서 보상해 주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하는 개별 법률에 대해서 그것을 의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태안의 어떤 시설인지 모르지만 태안 무슨무슨 추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충돌하는 다른 법령의 내용들에 대한 의제처리 조항을 집어 넣고 또 해당 지역주민들,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도 집어 넣어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그게 진짜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 구조를 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들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이게 빨리 될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 더 더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수부 차원에서 어쨌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해서 특히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원칙을 갖고 갈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원칙들이 좀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의 입장은 가급적 그 사업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 그 특별법 속의 의제처리 조항을 통해 충돌하는 법령에 대한 의제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규정 이런 것들을 담아 내도록 해야 그게 어쩌면 빨리 진행되고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더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철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경태 이제 시간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잠깐만, 박성훈 의원안 반대인 게요 ‘타당하다고’라는 말이 얼마나 황당 무계한 말인 줄 아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소위원장 조경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11항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훈 의원님 안도 유보시키는 걸로 할까요?

○주철현 위원 보류 좀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타당하다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요. 오히려 공익의 목적에 합당할 경우에는 수용한다 그러면 제가 수용하겠어요. 그런데 타당하다는 말은 어떤 기준으로 뭐가 타당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공기관이 해석할 때 이해관계인이 뭐라고 하거든 타당하다는 말 기준이 뭔지, 없는 기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법문에 표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주철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딱 느꼈었는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법에 돼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의견 들었으니까 해 주면 된다라는 거고 일부에서는 의견이 찬성으로 다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허가 관청의 판단 근거를……

사실은 하위법령에 의해서 원래 인허가해 줄 때 찬성·반대하면 반대에 대해서 다 의견 달고 해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를 법에다가 넣어 주자라는 취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공익 목적’이라는 표현 정도로 넣어서 해 주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보다는 ‘부합할 경우’ 이 정도로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주철현 위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 위딩은 전문위원님하고 좀 더 상의해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경태 이번에 안 해도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11시12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송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5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법의 보상 대상자의 범위에 1989년 공공기관에 전달된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받은 어업인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어업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을 충실히 실시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보상신청 건은 약 15건, 약 4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입법 시 별도 접수를 받거나 재심의 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에 인용된 공문은 환경청장이 면허 연장을 제한하는 지시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환경청에서 시행한 협조요청문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협조요청(환경청 수제 31810-6339호)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 하나, 여기 자료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부칙과 관련해서 해수부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시행일을 바로 공포하는 날 즉시 시행이 아니라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정안이 입법되면 추가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심사도 해야 되고 어떤 절차들이 한 3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입장 말씀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11시14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병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개정안은 국가의 폐어구 집하장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으로 폐어구에 대한 수거·처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집하장 등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고보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폐어구 회수·관리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폐어구 등 수거·처리 비용을 폐어구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어구실명제 법제화 등으로 폐어구 관리체계가 정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폐어구 등 소유자에게도 관련 비용을 적절히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입장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의사일정 제13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11시16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기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6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재해보상보험금에 대한 전용계좌 및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선원에 대한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유기구제비용 등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류된 계좌에 입금된 보험급여에는 압류 금지 효력이 미치

지 않기 때문에 선원이 수령한 비용 등이 압류될 수 있어서 수급권 보호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보호의 공백을 보완하고 선원의 생계권과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유기구제보험 등을 실제 운영방식과 성격상 사회보험에 가깝고 채권자의 재산권 제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압류 금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또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수정을 결정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어떤 금액을 정하더라도 관련 입법례를 보시면 대체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보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규정의 형식이나 그리고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기 위해서는 수정의견대로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11시18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5항 주철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7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운항만업 정의규정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입니다.

개정안은 해운항만업의 정의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하여 이들 업종의 친환경·대형 선박 전환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아래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도선업을 소형선박, 그러니까 선박길이 12m 미만을 이용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도선선 전체가 이런 소형선박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하므로 범위를 넓혀

서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11시20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어기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7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수산신지식인의 육성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해양수산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산신지식인의 육성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신지식인 관련 법률은 없으며 다만 해수부와 농식품부에서 훈령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신지식농업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지식인 관련 용어 통일 및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해 농림 분야 신지식인의 법률화 여부도 연계하여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입니다.

한편 신지식인의 뜻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수정의견의 내용은 지금 해양수산부 훈령에 규정된 수 산신지식인의 정의를 인용해서 수산신지식인의 정의규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산신지식인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서천호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그 내용도 여당 위원님들께서 함께 의견을 조금 더 모아서 다시 대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서 의원님하고 조율을 해 주십시오.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이병진 위원 계류한 거 아닙니까?

○조승환 위원 논의하시지요, 뭐.

○소위원장 조경태 사실은 남해 쪽이 아니고 태안 쪽이니까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회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문대림 서천호 송옥주 이병진 조경태 조승환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해운물류국장 허만욱

정책기획관 권순욱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